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90

발의연월일: 2021. 11. 23.

발 의 자:이주환·김용판·권명호

박대수 · 백종헌 · 조경태

김성원 · 조명희 · 하영제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및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의 통지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중지관련 조항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문서와 서면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 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46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발명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
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	ス])
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u>문서</u> 로	문서(「전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	한다. 이하 같다)
려야 한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
정 등) ① ~ ③ (생 략)	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4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	
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u>서면으</u>	문서로-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	2
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u>문</u>
<u>서면으로</u> 분쟁당사자에게 알려	서로

야 한다.
